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2.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고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임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의실과 실습림(實習林)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산림청)	→	확인·검토 처리기관 (산림청)	→	기안·결재 처리기관 (산림청)	→	지정 통보 처리기관 (산림청)